

#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함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 (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5)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 1.)

다. 위탁사무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 전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공개경쟁 입찰(구미시 및 인근 지역 업체 우선 선정)

- 슬레이트 면적 조사 실시  
(위탁기관, 철거업체, 건축소유자 3자 확인 조사)

- 슬레이트 처리 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등

라. 위탁기간 : 2026년 ~ 2027년(2년간)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2026년 기준)

(1) 사업량 : 슬레이트 철거 100동(주택 87동, 비주택 13동), 지붕개량 11동

(2) 소요예산 : 445,520천원(지특 50%, 도비 15%, 시비 35%)

(단위 : 천원)

총 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계	주택	비주택	
445,520	376,440	306,240	70,200	69,08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1)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2) 평가내용 :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 심사

(3)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3. 부서 의견

가. 슬레이트의 주성분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슬레이트 해체·처리 시 작업장 위험요소(근로자 및 주변 주민의 석면 노출)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

나.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지붕개량까지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기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 (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5)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 1.)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 우수(재위탁 가능)

#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성과평가

## 1. 평가개요

가. 위탁사무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나. 위탁기관 : (사)한국석면안전협회

다. 위탁기간 : 2024년 ~ 2025년(2년간) ※ 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

라. 사업비 : (2024년) 982,800천원, (2025년) 814,500천원

마. 평가내용 : 위탁기간 내 수행능력 평가

## 2. 평가결과 : 우수(86.3점)

부문 평가항목 (배점)	총점 (100)	공통분야(40점)				개별분야(60점)			감점 요소
		사업계획 (10)	안전관리 (10)	예산관리 (10)	성과관리 (10)	안전관리 (20)	사업성과 (10)	만족도 (20)	
평가점수	86.3	8	9.7	8.3	9	17.7	16.3	17.3	0

## 3. 총 평

가. 체계적인 조직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한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지붕개량까지 사업의 연속성 및 위탁운영이 우수함

나. 또한, 슬레이트 처리 작업현장 안전조치가 철저하며 철거 일정 조율 등 사업 관련 민원해결에 적극적임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 1.)

### Ⅲ. 사업추진 절차

#### Ⅲ-1. 사업자 선정 중 사업 추진방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

#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5년간의 비용추계이며, 위탁수수료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8%로 산정

[참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 1.)

### Ⅲ-1-5. 위탁(사업자) 수수료 산정시 유의사항

- 위탁수수료는 지급요율을 8% 이내에서 지급하고, 그 외 지급 기준(집행액, 철거 가구당 등)·방법, 위탁내용·범위, 예외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지급(단,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요율 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추후 수수료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사업자와 계약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 3.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세입	○ 국비(지특)	222,760	292,800	339,600	386,400	433,200	1,674,760
	○ 도비	66,828	87,840	101,880	115,920	129,960	502,428
	소계(a)	289,588	380,640	441,480	502,320	563,160	2,177,188
세출 (b)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445,520	585,600	679,200	772,800	866,400	3,349,520
□ 총 비용(a-b)		- 155,932	- 204,960	- 237,720	- 270,480	- 303,240	-1,172,332

4. 재원조달 방안 : 지특 50%, 도비 15%, 시비 35%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국비(지특)	222,760	292,800	339,600	386,400	433,200	1,674,760
도비	66,828	87,840	101,880	115,920	129,960	502,428
시비	155,932	204,960	237,720	270,480	303,240	1,172,332
합계	445,520	585,600	679,200	772,800	866,400	3,349,52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최다인(☎480-529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6년 기준)

구분	지원금액	물량(동)	금액	비고
슬레이트 철거	주택	3,238,400원	87	281,740,800원
	비주택	4,968,000원	13	64,584,000원
지붕개량	5,777,600원	11	63,553,600원	
위탁수수료 (8%)			35,641,600원	
합계			445,520,000원	

※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금액 및 사업물량 변동 가능

소 관 부 서		환경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정 찬 기
	팀 장	김 현 주
	담 당 자	최 다 인 (480-5292)